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14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8. 1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공무원 보호,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공가 규정 정비,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 근무 제한 시간 확대(안 제15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가 사유 신설(안 제23조)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다.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5일→10일)

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2. 7. 7.~2022. 7. 27.)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5조 : 임신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 근무 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

- 안 제22조 : ‘의사의 진단서’를 ‘「의료법」 제17조1)에 의하여 교

1)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출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출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출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출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출 수 있다.

부된 진단서'로 변경하여 병가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23조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에 따라 공

-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집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원 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가 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함.

제23조(공가)

1. ~ 11. (생략)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안 제24조** :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제1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호부터 2호까지 신설하는 것임.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에 따라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